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

서울중앙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김종우

전화 02-530-4780 / 팩스 02-536-5410

보 도 자 료

2024. 3. 29.(금)

제 목 前 **중앙선관위 사무차장,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등의 자녀와 지인 부정채용 비리 중간 수사결과**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(제11조 제1항)

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1부(부장검사 김종현)는 2018. 1.~3. 실시된 충북선관위 경력공무원 경쟁채용과정에서 자녀 및 지인의 자녀를 부정채용한 **前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A, 前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B, 前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 C를 오늘(3. 29.)**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,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.

- 수사한 결과, **A사무차장, B관리과장, C관리담당관은,** A의 딸 D(당시 보령시청 공무원)를 부정채용하기 위해 ▲이미 추천된 **다른 공무원을 채용대상에서 배제**하고, ▲D를 **합격자로 내정**한 채 **채용적격성 조사를 형식적으로 실시**한 후, ▲충북선관위 **내부직원들로만 시험위원을 구성**하는 한편, ▲면접 전 시험위원들에게 **D가 A의 딸임을 알려 최고점**을 받게 하고, ▲**이를 숨기고 중앙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임용**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,

- 다른 한편, **B관리과장, C관리담당관은,** B의 지인의 딸 E(당시 괴산군청 공무원)를 부정채용하기 위해 ▲**괴산군을 경력공무원 채용대상 지역으로 임의로 지정**하고, ▲**후보자 추천 절차를 생략하여 E를 합격자로 내정**한 다음, ▲D와 같은 방법으로 채용적격성 조사 및 면접을 진행하고, ▲**이를 숨기고 중앙선관위의 승인을 받아 임용**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● 선관위 고위공무원인 피고인들은 **선관위 공무원직을 세습시키고자 지방직 공무원**으로 재직 중이던 **자녀 및 지인을 합격자로 내정**한 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**'깜깜이 채용'**을 통해 **국가직인 선관위 공무원으로 전환**시키는 등 **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인사제도를 사유화**하였습니다.

● 앞으로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**공소유지에 만전**을 기하고,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**실체규명**을 위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.

Ⅰ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1 피고인

- **A**(61세, 前 중앙선관위 사무차장, 당시 한국학중앙연구원 파견)
- **B**(62세, 前 충북선관위 사무처장, 당시 충북선관위 관리과장)

※ 관리과 : 시·도선관위의 선거관리 및 채용 등 인사업무를 총괄하던 부서(선관위 조직개편으로 현재 선거관리 업무는 선거과에서, 인사업무는 총무과에서 각각 담당)

- **C**(55세, 現 ○○선관위 사무국장, 당시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)

2 공소사실 요지

- **(A, B, C 공동범행) A의 딸 D 부정채용**

- 2018. 1.경 중앙선관위 고위직으로 근무하던 A가 자신의 딸 D(당시 충남 보령시청 근무)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B와 C(각 인사업무 담당)에게 청탁하고, B와 C는 청탁에 따라 ▲이미 추천된 다른 공무원을 채용대상에서 배제하고, ▲D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채용적격성 조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한 후, ▲충북선관위 내부 직원들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하는 한편, ▲면접 전 시험위원들에게 D가 A의 딸임을 알려 최고점을 받게 하고, ▲이러한 과정을 모두 숨긴 채 중앙선관위로 하여금 전입 승인토록 함 **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, 위계공무집행방해]**

- **(B, C 공동범행) B의 지인 딸 E 부정채용**

- 2018. 1.경 B는 위 경력채용 당시 자신의 고교 동창 딸 E(당시 괴산군청 근무)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, C와 공모하여 ▲괴산군을 경력공무원 채용대상 지역으로 임의 지정하고, ▲후보자 추천 절차를 생략하여 E를 합격자로 내정한 다음, ▲D와 같은 방법으로 E에 대한 채용적격성 조사 및 면접을 진행하여 E로 하여금 최고점을 받게 하고, ▲이를 숨긴 채 중앙선관위로 하여금 전입 승인토록 함 **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, 위계공무집행방해]**

Ⅱ 주요 수사 경과

- 2023. 5.~9. **피고인 등에 대한 고발장·수사의뢰 접수**
- 2023. 9.~11. **피고인들 주거지, 중앙·충북선관위 등 압수수색**
- 2023. 11.~2024. 3. **피고인들 및 참고인들 조사**(B, C의 E 부정채용혐의 추가 인지)
- 2024. 3. 7. **A, B 구속영장 법원 기각**

※ 기각사유 요지 : 공무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사안이나, 관련증거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고,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없어 구속의 필요성·상당성 인정 어려움

- 2024. 3. 29. **A, B, C 각 불구속기소**

Ⅲ 수사 결과 및 의의

□ 선관위 고위직 공무원들의 '인사제도 사유화'

- 검찰은 3회에 걸친 주거지 및 중앙·도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**선관위 고위직 공무원이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자녀·지인 등을 채용하는 데 활용하였음을 확인**하였습니다.

- **B와 C는 괴산군청 소속인 B의 지인 딸 E 채용**을 위해 충북선관위의 **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지위 및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**하였습니다.

- B와 C는 결원 충원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 14개 시군구선관위 중 친구 딸 E의 근무지(당시 괴산군청 근무)인 **괴산군선관위를 경력경쟁채용을 통한 충원 대상으로 임의로 지정하고,**

※ 경력경쟁채용(일명 '경채') :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다수인을 상대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으로, 지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입 등이 있음

- 인사담당 공무원에게 **비다수인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할 것을 지시**하는 한편, E 채용에 있어 경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**괴산군선관위에 다른 응시대상자를 물색하지 말라는 취지로 연락**하였습니다.

※ 비다수인 경력경쟁채용 : 지원자 물색 곤란, 지역인재 선발 필요성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공고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채 실시하는 채용

- **A는 충남 보령시청에 근무하던 딸 D가 평소 선관위 전입을 원하던 중** 선관위 내부인으로부터 충북선관위의 경채 진행 사실을 전해 듣고 충북선관위 인사담당 간부들인 **B 및 C에게 D의 채용을 청탁**하였습니다.

- 당시 A는 **D의 채용경쟁을 피하고자** 충북선관위 관계자들에게 **D의 연고가 없는 단양군선관위 채용을 요구**하였고, **B와 C는 고위직인 A의 채용 요구에 응하였습니다.**

※ A와 C는 D에 대한 채용청탁 후 D가 충북선관위에 채용될 때까지 D의 이름 및 연락처, 원서접수 여부, 채용예정일 등 채용과정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공유하였음

- **피고인들은 충북선관위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채용대상자를 D와 E로 특정하여 경력경쟁채용절차를 진행**하게 하는 등 **이들을 합격자로 내정한 후 채용절차를 진행**하게 하였습니다.

□ 고위 공무원들의 '공직 세습화'

- 선관위는 **'선거의 공정한 관리'를 위해 헌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독립기관**으로, 기관업무의 특성상 **지방직 공무원보다 승진기회가 많고 민원응대 소지도 적은 것으로 인식**되고 있습니다.

- **인사혁신처**에 따르면 **선관위 공무원은 입직 후 평균 1.83년만에 8급으로 승진**하여 **국가직보다 2.05년, 지방직보다 0.29년** 빨리 승진하고, **평균 2.92년 만에 7급으로 승진**하여 **국가직보다 3.29년, 지방직보다 1.59년** 빨리 승진합니다.

[선관위-국가직-지방직 평균 승진소요연수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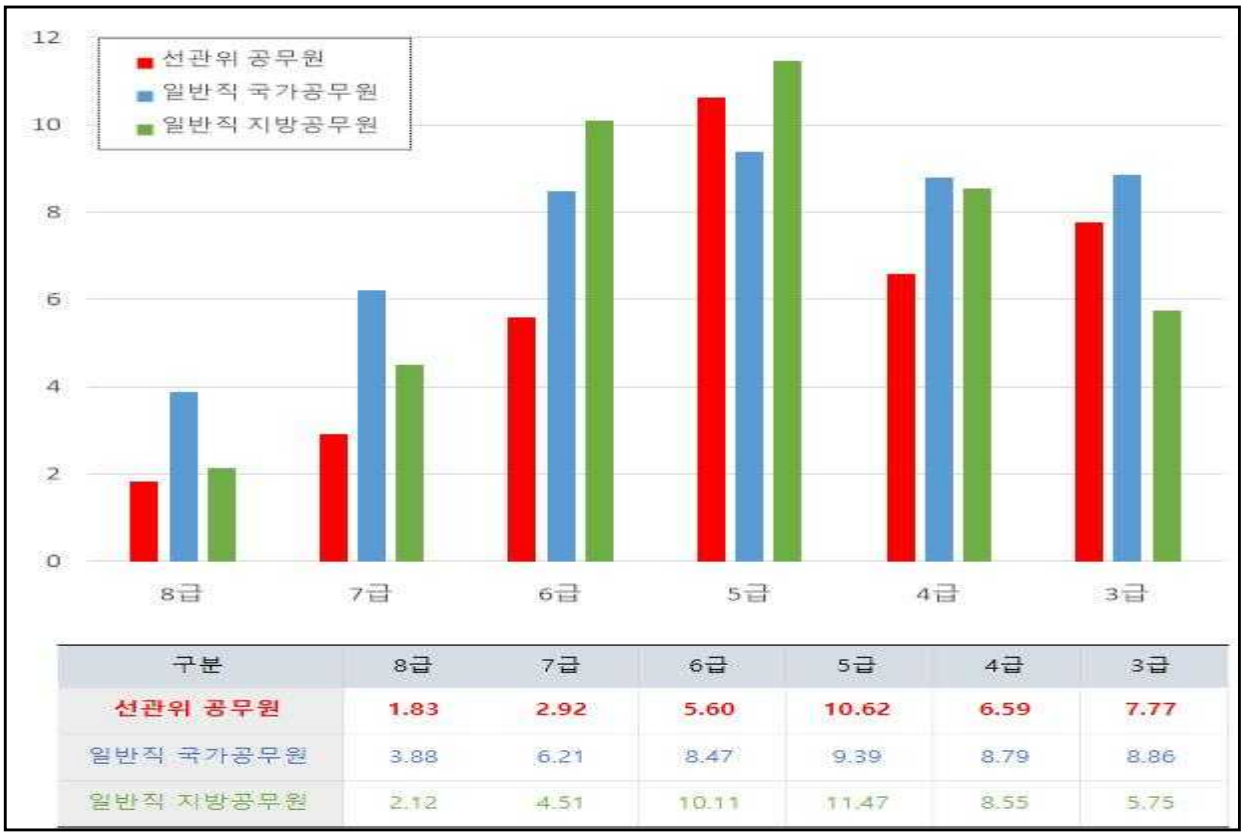

구분	8급	7급	6급	5급	4급	3급
선관위 공무원	1.83	2.92	5.60	10.62	6.59	7.77
일반직 국가공무원	3.88	6.21	8.47	9.39	8.79	8.86
일반직 지방공무원	2.12	4.51	10.11	11.47	8.55	5.75

출처 : 인사혁신처『2018년 공무원 총조사 보고서』

- A와 B는 **경력경쟁채용 제도의 허점을 악용**하여 **공직을 자녀 등에게 세습**시키고자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- 실제로 D와 E는 8급으로 선관위에 전입한 후 **D는 1년 4개월(8급 승진 후 2년 2개월)**만에, **E는 1년 10개월(8급 승진 후 2년)**만에 각각 7급으로 승진하여 **같은 직급의 지방직 공무원들보다 이른 시기에 승진**하였습니다.

□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'불공정채용' 사례

- 피고인들은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**채용공고 없이 '비다수인 경력경쟁채용' 형태**로 실시하게 하면서 **채용대상자를 D와 E만으로 지정**하게 하여 사전에 **이들을 내정한 상태로 '깜깜이' 채용**을 진행하게 하였습니다.

- 비다수인 경력경쟁채용은 경력경쟁채용 중 **공개경쟁채용으로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제도**로, 이러한 경우에도 **국가공무원법상 '능력의 실증'에 따라 적합한 인재를 채용**해야 합니다.

※ 2018. 경채를 실시한 시·도선관위 중 비다수인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한 곳은 충북선관위가 유일하였고, 충북선관위 또한 본건 직전 및 이후 채용시 공개경력경쟁채용을 실시

- 피고인들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채용이 진행된다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**경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**하고, **실질평가 없이 D와 E에게 면접에서 만점을 부여**하는 등 제도를 **가족 및 지인 채용에 악용**하였습니다.

● 특히 피고인들은 A의 딸 D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**단양군선관위 전입을 희망하는 지원자(단양군청 소속 공무원)가 있음을 알면서도** 위 지원자에게 **응시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** D만을 대상자로 내정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.

- 또한 B와 C는 E를 채용하기 위해 **E가 근무하는 괴산군을 경채대상 지역으로 임의로 지정**하고, **다른 지원자가 있는지 여부를 괴산군청 등에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E를 내정**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.

● 이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 중앙선관위 특별감사위원회에서도 경력경쟁채용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해 **▲경력경쟁채용 제한적 실시 및 중앙선관위의 통합관리, ▲비다수인 경력경쟁채용 폐지, ▲공채에 준하는 면접방식 도입 등을 제안**한 바 있습니다.

Ⅳ 향후 계획

●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**공소유지에 만전**을 기하는 한편, A와 함께 고발되었던 前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선관위 부정채용 관련 사건의 **실체규명**을 위해 **신속히 수사를 진행**하겠습니다. ▨